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

[서울남부지법, 2006.9.8, 2006가합7557]

【판시사항】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절차가 이미 종료한 경우,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(소극)

【판결요지】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한 경우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
【참조조문】

민사소송법 제250조

【전문】

【원 고】 박춘호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외 1인)

【피 고】 한나라당

【주문】

】 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이유】

】 1.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.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책임당원으로서, 사전선거운동을 한 소외 맹정주를 제3회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피고의 결정은 피고의 당헌 · 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, 피고를 상대로 강남구청장 후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.

나. 판 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,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바,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06. 5. 31.자 지방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미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,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
2.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민걸(재판장) 판사 서아람 판사 김수정